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19. 11. 26(화) 10:00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
(미래발전추진단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53호
- 나. 제 출 자 : 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 는 규정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자 대상 : 금천일자리주식회사
- 나. 출자 필요성
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원 지원
- 다. 출자금 규모 : 290,000천원
 - ▶ 출자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, 2020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의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 - 2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 - 3)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재정지원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출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,
-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. 7. 설립예정으로
설립과 출범 이후 안정적이며 정기적 일자리의 보급과 지속적 근로 가능으로 실질적 생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출자금의 규모는 2억 9천만원이며, 구의회 동의 이후 2020년 예산안에 심의 의결될 예정으로,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-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자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.

관계법령

【지방재정법】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20조(재정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(해산)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8조(재정지원)

-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.